

「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」 신설 안내

1. 윤리인권위원회에서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에 따라 「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」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2. 신고 절차: 본교 「윤리센터 규정」, 「인권센터 규정」, 「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신고 절차와 동일합니다.
 - 각 센터의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사전 약속 후 내방하여 상담,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- 윤리센터: 02-2123-2116 / cleanyonsei@yonsei.ac.kr
 - 인권센터: 02-2123-2116~7 / humanrights@yonsei.ac.kr
 - 성평등센터: 02-2123-2118 / helper@yonsei.ac.kr
3. 처리 절차: 공식 접수된 사건은 각 센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거쳐 심의 및 의결됩니다.
 - 자세한 처리 절차는 각 센터의 홈페이지 및 붙임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구제 절차: 다음의 경우, 신고인 보호를 위한 공식 구제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 - (1) 신고인 등이 「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위반으로 인해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
 - (2) 신고인 등이 「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」 제8조 위반으로 인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
 - (3) 신고인 등에게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
 - (4)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
 - (5) 신고인 등에게 기타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

- 붙임 1. 「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」 1부.
2. 「윤리센터 규정」 1부.
3. 「인권센터 규정」 1부.
4. 「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」 1부.